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91호로 2023년 8월 11일 남완현 의원 외 1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조례의 기본원칙(안 제3조)
- 다. 적용범위 및 지원범위(안 제4조~제5조)
- 라. 지원 기준 및 절차(안 제6조)
- 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8조)
- 사.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이고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휴직 중, 정직·직위해제 중,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지원사항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각각 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제21조의2 등 상위 법령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의 공무수행 시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 ③ (생략)

4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 ③(생략)